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2월 2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3월 13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술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 「친환경농어업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우리 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분석실 운영·관리(안 제3조)
- 분석의뢰 및 분석업무 처리 절차(안 제4조 ~ 제5조)
- 분석결과의 목적 외 활용 금지(안 제8조)
- 분석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안 제9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3]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안 제9조제2항 중 ‘적용하며, 징수절차는 평창군 회계관리 규칙을 따른다.’를 ‘적용한다’ 로 수정한다.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2.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3.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46호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4. 3. 14.

제안자 : 조례특위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적정한 준용 규정을 정정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적합하지 않은 자치법규 준용 조문 삭제(안 제9조)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적용하며, 징수절차는 평창군 회계관리 규칙을 따른다.’를 ‘적용한다’ 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분석 수수료) ① (생략)</p> <p>② 분석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 기준을 적용하며, 징수절차는 「<u>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을 따른다.</p>	<p>제9조(분석 수수료) ①(제정안과 같음)</p> <p>② ----- ----- ----- -----</p> <p>- <u>적용한다.</u></p>

제29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 3. 14.)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옥)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4. 2. 29.
- 회부일자 : 2024. 3. 13.
- 상정일자 : 2024. 3. 14.

2. 제안이유

- 「친환경농어업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우리 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분석실 운영·관리(안 제3조)
- 분석의뢰 및 분석업무 처리 절차(안 제4조 ~ 제5조)
- 분석결과의 목적 외 활용 금지(안 제8조)
- 분석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안 제9조 ~ 제10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농산물 생산 지원’을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관내 농업 환경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 및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운영·관리)는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분석결과외의 광고 등 금지)는 분석결과를 농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안 제9조(분석 수수료)에서 분석 의뢰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및 시험경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다만, 징수절차에 대해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르게 하였는데, 해당 행정규칙은 공무원의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준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방 회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세입 처리가 가능하므로 준용 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현행안	수정검토안
<p>제9조(분석 수수료) ① <생략></p> <p>② 분석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 기준을 적용하며, 징수절차는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p>	<p>제9조(분석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적용한다.</p>

○ 안 제10조(수수료 면제)에서 수수료 면제 대상을 정함.

※ 면제: ① 국가 또는 공공기관, 타 지자체 ② 관내 농업인 ③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종합검토의견

○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농산물의 안전한 생산에 기여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제정 가능하다고 사료됨.

□ **지방회계법**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그 밖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정전이 발생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및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제21조(수납금의 납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금고(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 제29조, 제50조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 같다)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제22조(금고에서의 수납)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접수 도장을 찍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회계관계공무원이 평창군 예산 및 기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 회계를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2. 법 시행령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에 관해서는 회계관계법령 등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관직지정 등) ① 군수가 법 제10조제1항,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각각 지정하는 평창군 회계관계공무원(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직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징수관과 재무관·지출원의 겸무금지 및 예외에 관해서는 훈령 제3조제3항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기타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의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5조(직무위임 등)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회 징수관 및 재무관 각각의 직무위임 범위와 수임자에 대해서는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 품의) ① 군수는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국장 및 실·과장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이하 “품의”라 한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사무과장은 의회 소관예산에 관해서는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그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품의 합의 등) ① 실·과에서 품의를 할 경우 별표 5의 경비에 대해서는 각각 본청은 행정지원국장 또는 회계과장과,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는 회계업무담당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할 사항에 관해서는 훈령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② 각 실·과장은 별표 6의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예산집행) ① 군수 또는 재무관은 소관예산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해서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규모 공사·용역 및 임차, 인쇄물·소모품의 매입·수리·운반 등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집행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조례에서 정한 절차·방법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각 실·과장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 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및 계산서 작성) 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훈령 제77조제4항 및 제105조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납원을 대리하도록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1. 인계사무의 처리
2. 계산서의 작성

② 제1항의 직무대리자가 그 인계사무를 처리하거나 계산서를 작성한 때에는 각각 해당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분임출납원의 보고 등)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훈령 제103조 단서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임출납원이 공식(空席), 교육,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일상적 계산업무를 범위를 벗어날 경우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4]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6
----------	-----

제출년월일 : 2024. 2. 2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친환경농어업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우리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합분석실의 분석수행 항목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분석의뢰 및 분석업무 처리 절차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분석 거부 사유에 관하여 정함 (안 제6조)
- 분석결과 통지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
- 분석결과의 목적 외 활용 금지에 관하여 정함 (안 제8조)
- 종합분석실 분석 수수료에 관하여 정함 (안 제9조)
- 종합분석실 분석 수수료 면제에 관하여 정함 (안 제10조)
- 종합분석실 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정함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에 70,568천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1. 10. ~ 2023. 1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2023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2023. 12. 14.)와 심의, 원안의결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실시하는 농경지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농약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센터 내에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분석의뢰서를 대체할 수 있다.

- ③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 및 가축분뇨일 경우에는 분석 의뢰용 시

료 봉투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를 받은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분석의 거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시료 및 분석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분석 결과 통지) 군수는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분석결과를 분석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표시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 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평창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의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

퇴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분 석 항 목(제2조 관련)

분 석 항 목 명	분 석 성 분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산도, 전기전도도, 석회소요량
2. 농경지 토양중금속성분	○ 아연, 납, 니켈, 구리, 총크롬(6가크롬), 카드뮴, 비소, 수은
3. 가축분뇨 퇴·액비	○ 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등
4. 잔류농약 (생산단계 농산물)	○ 320성분(Acephate 외)

[별표 제2호]

분석의뢰 절차(제5조 관련)

신청자	처리기관	처리기한 30일 (분석여건에 따라 다름)
	농업기술센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10px;"> 의뢰서작성 및 수수료 납부 →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접수</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분석실시</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분석결과서 작성</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결과통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접수: 수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분석 실제 소요기간</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분석완료 즉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top: 10px;"> ← 분석결과서 교부 </div>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00-00호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				
접수번호				
의뢰자	시료채취자		인증기관	
	주소		접수일자	년 월 일
의뢰내용	생산자		시료명	
	채취장소			
	분석성분			
	검사목적			
분석결과	검출성분명	검출량 ppm(mg/kg)	허용기준치 ppm(mg/kg)	
<p>상기 분석결과는 의뢰인으로부터 접수된 시료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의뢰목적 이외의 상업적 광고 및 법적 해결 수단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귀하가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20 년 월 일</p> <p>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p>				

※토양 및 가축분뇨 분석에 대한 결과는 흙토람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결과서를 통지한다

관계법령 발췌

□ 농산물직거래법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법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 6호 생략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

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제12조(정의)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조례안 제3조(운영·관리), 제9조(분석수수료)

나. 비용발생 요인: 종합분석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연1.4% 인상),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소요예산 항목별 적용

나. 추계 결과

○ 세입: 37,080천원(수수료 부과대상인 경우)

- 토양분석: 122,700원 × 100건 = 12,270천원

- 가축분뇨분석: 74,100원 × 100건 = 7,410천원

-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174,000원 × 100건 = 17,400천원

○ 세출: 연간 세출예산 추계 아래 표 참조

내역	산출기초(2024년)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70,568	국비9,700, 군비60,868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101-04) : 기간제근로자 1명	23,168	군비23,168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특수건강진단비, 폐기물 처리비 등	15,000	국비3,500, 군비11,500
	공공운영비(201-02) : 시설장비 유지비	7,000	군비7,000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207-03) : 실험재료비	25,400	국비6,200, 군비19,200

다. 재원조달 방안: 국비 보조 및 자체 재원(2024년 당초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연락처	(033) 330 - 1304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37,080	37,080	37,080	37,080	37,080	185,400
분석수수료 수입		37,080	37,080	37,080	37,080	37,080	185,400
세 출		70,568	80,450	90,780	91,120	91,460	424,378
인건비		23,168	23,450	23,780	24,120	24,460	118,978
일반운영비		22,000	27,000	32,000	32,000	32,000	145,000
연구개발비		25,400	30,000	35,000	35,000	35,000	160,400
재원 조달		70,568	80,450	90,780	91,120	91,460	424,378
의존 재원	소 계	9,700	11,000	11,000	11,000	11,000	53,700
	보조금	9,700	11,000	11,000	11,000	11,000	53,7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0,868	69,450	79,780	80,120	80,460	370,678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60,868	69,450	79,780	80,120	80,460	370,678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